

6. 대표적인 착오 신고 사례 및 올바른 신고방법

① '13.7.1 연도 중 중간 입사자의 근무기간을 '13.1.1~13.31로 신고

- 총급여 1,000만원이며, 총근무일수가 184일인 근로자
- 맞는 기준소득월액 : 1,630,000원 ($10,000,000 \div 184\text{일} \times 30$)
-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 821,000원 ($10,000,000 \div 365\text{일} \times 30$)

⇒ 근무시작일을 입사일자(7.1)로 신고

② '13년 12월 급여를 '14년 1월 지급 후 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

- ※ 소득세법시행령제49조 :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 '13.11.1 입사하여 11월급여(100만원, '13년 12월 지급), 12월급여(100만원, '14년 1월 지급) 발생
- 맞는 기준소득월액 : 983,000원 ($2,000,000\text{원} \div 61\text{일} \times 30$)
-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 491,000원 ($1,000,000\text{원} \div 61\text{일} \times 30$)

⇒ '13. 12월분 급여를 소득총액에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

③ 휴직기간 미반영 : 휴직을 하였으나,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13.1.1 입사, 총급여 2,000만원이며, 90일간 산전후휴가였으나 납부예외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가 일부(100만원) 발생
- 맞는 기준소득월액 : 2,072,000원 ($19,000,000\text{원} \div 275\text{일} \times 30$)
-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 1,643,000원 ($20,000,000\text{원} \div 365\text{일} \times 30$)

⇒ 소득총액에서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제외하고, 실제 휴직일수 (90일)를 신고

④ 퇴직금 정산 등으로 주(현)과 종(전)으로 분리 신고하고, 근무기간과 소득총액을 다른 기준으로 신고

- 주(현) 급여총액은 퇴직금 정산 후 지급된 급여총액으로, 주(현) 근무기간은 1년으로 신고 ⇒ 실제소득보다 낮게 결정됨

⇒ 근무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급여총액이 일치되도록 신고

7. 소득총액 신고 Q&A

Q&A 과세자료를 활용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 사업장의 신고업무 경감을 위하여 소득세법 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며 공단이 과세 자료를 입수 ·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결정 후 통지합니다.

(단, 소득총액신고대상은 사업장의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

⇒ 2013년 소득총액 \div 2013년 근무일수(근무기간 - 휴직일수) $\times 30$

- 사업장에서는 6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시고,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공단에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공단은 6월초부터 홈페이지 및 EDI를 통해 과세자료에 의한 기준 소득월액 결정내용을 사전 안내합니다.

Q&A 취득 · 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 2013.12.1 이전 입사자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서 하단 여백에 추가 기재 후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신고 대상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 줄로 그은 후 여백에 "상실"이라 기재 후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

Q&A 인턴(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소득총액 신고방법은?

- 연도 중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이 변경된 경우(근로 계약 변경 시점으로 자격 상실 후 재취득 신고),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 및 소득총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13.1.1 입사, 3개월인턴(총급여300만원), 4월부터 정규직(총급여1,800만원)
⇒ 맞는 기준소득월액 : 1,963,000원 ($18,000,000\text{원} \div 275\text{일} \times 30$)
⇒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 1,726,000원 ($21,000,000\text{원} \div 365\text{일} \times 30$)
※ 공단에서는 전년도 취득(납부재개)자에 대해서도 과세소득을 활용하여 신고 소득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소급 정정하오니, 취득(납부재개)자의 소득도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A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으나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아 소득총액 신고 대상(5유형)이 되었는데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하나요?

-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소득총액신고서에 실제 휴직 일수를 기재하고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소득총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Q&A 소득총액 미신고시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 가입자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에 2013년도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3.1%)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Q&A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은 매년 조정되나요?

-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 4,080,000원, 하한액 260,000원이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매년 3월 고시, 7월부터 적용)
※ A값 : 최근 3년간 전체가입자의 소득월액의 평균 (물가상승 반영)

Q&A 연봉제 시행으로 개인별 소득이 노출되면 안되는데 기준 소득월액 결정통지서(6월 발송)를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나요?

- 국민연금 웹EDI 서비스 가입(<http://edi.nps.or.kr>) 후 신고서 작성
⇒ 연금고유신고서 ⇒ 소득총액신고서 화면에서 "우편발송 제외 신청"을 하시면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서가 EDI로만 발송됩니다.

2013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수록 내용

1. 소득총액 신고란?
2. 소득총액 신고방법
3.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4. 소득총액 신고 주요 업무흐름
5.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
6. 대표적인 착오 신고 사례 및 올바른 신고방법
7. 소득총액 신고 Q&A



1. 소득총액 신고란?

- 공단이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자료상이자, 과세자료 보유자 중 30% 이상 상·하향자, 휴직일수 상이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2. 소득총액 신고방법

신고대상

- 2013. 12. 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 납부예외중인 자 및 2013. 12. 2 이후 취득(납부재개)자는 제외

신고사항

- ① **근무기간** : 2013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사업)기간
-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13년도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부터 산정
- 2013년 중도 입사자의 근무시작일은 2013.1.1이 아닌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산정
- ② **휴직일수** : 2013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 기재
- ③ **소득총액** : 위 근무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소득)
- 개인사업장사용자 :『사업소득명세서』상의 ⑩번 소득금액
- 근로자(외국인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주(현)근무처의 ⑯번 금액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신고기한 2014년 6월 2일(월)까지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14. 6. 30(월)까지 신고 가능]

신고방법

-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 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13년도 신고 사항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직접, 우편 또는 FAX로 제출
- 국민연금 웹EDI(<http://edi.nps.or.kr>) 및 사회보험 EDI 서비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하여 신고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 2013.12.1이전 취득(납부재개)자 : 2013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2014년 7월 ~ 2015년 6월까지 적용
- 2013.12.2이후 취득(납부재개)자 : 취득(납부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을 2015년 6월까지 적용 (상·하한액 조정자는 예외)

3.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소득총액 신고서의 신고유형란에 유형 표기

유형	발췌 대상	발췌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소득 신고자료 없음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자료상이자	소득 신고자료가 없거나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불일치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 (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 상이자에 한함)	연말정산 신고 시 근무기간, 소득 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착오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 (납부예외신청기간이 산전후·육아 휴직 및 산재요양 휴직기간보다 1개월 이상 짧은 자)	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될 경우, 소득총액 대비 근무일수가 과다 산정되어 소득월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4. 소득총액 신고 주요 업무흐름

- ▶ 2014. 4월 2013년 근로소득자료 입수, 과세자료 보유자 결정처리
- ▶ 2014. 5월 소득총액 신고 안내 및 신고서 발송 · 접수
- ▶ 2014. 6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 발송
- ▶ 2014. 7월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보험료 고지
- ▶ 2014. 10월 공적자료 대비 소득 적정신고 여부 확인

5.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

연금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소득총액 신고내용에 따라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4년 7월~2015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 2014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험료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의 9%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은 “내연금(<http://csa.nps.or.kr>)” 또는 “국번없이 ☎ 1355”로 확인하세요.

작성방법 예시

근로자

- ※ 13.3.1. ○○상사에 입사, 5.1부터 5.31까지 휴직, 6.1부터 복직 근무
(단,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소득도 없음)

201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구 分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상사	□□기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 무 기 간	2013.03.01~2013.12.31				
⑬ 급 여	15,000,000		3,000,000		18,000,000
⑭ 상 여	5,000,000		500,000		5,500,000
⑮ 인 정 상 여					
⑯ 계	20,000,000		3,500,000		23,500,000

2013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서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근무시작일	공적 휴직일수	실제 휴직일수	소득총액
0001	홍○○	123456-12****	2013.3.1	3.1	0	31	20,000,000

● 근무시작일 작성방법

- ▶ 동일 사업장에 2013.1.1 ~ 3.25 및 2013.8.1 ~ 12.31 근무 ⇒ 8.1 ~ 12.31
- ▶ 실제 근무기간은 2013.1.1 ~ 12.31이나 2013.7.1 국민연금 가입 ⇒ 1.1 ~ 12.31
- ▶ 분리적용관계에 있는 A사업장에 2013.1.1 ~ 4.30 근무, B사업장에 5.1 ~ 12.31 근무 ⇒ 1.1 ~ 12.31(분리적용 사업장간 전입·전출시 합산하여 기재)

●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뺀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비과세소득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포함
(주식매수선택권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인출금비과세, 장기미취업자중소기업취업비과세)

- ▶ 2013년 전 기간 동안 휴직하였으나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득으로 신고
- ▶ 외국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소득 파악이 곤란한 해외 파견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액을 참고하여 신고

● 개인사업장사용자

2013년 귀속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 득 구 분 코 드	30 (부동산임대소득)	40 (사업소득)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000-00-00000	000-00-00000
⑧ 총 수 입 금 액	20,000,000	30,000,000
⑨ 필 요 경 비	5,000,000	10,000,000
⑩ 소 득 금 액(⑧-⑨)	15,000,000	20,000,000

※ 해당 사업장 소득금액을 소득총액에 기재하시되, 동일사업장에서 복수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은 소득총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